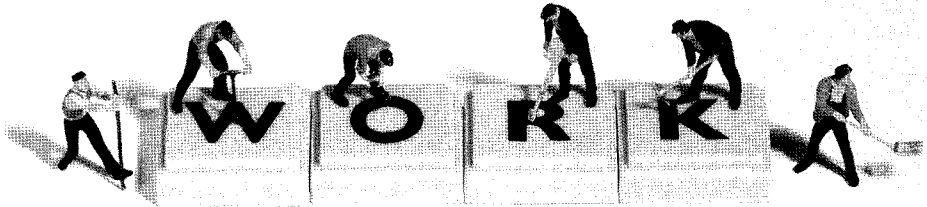


#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안내



본 내용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으며, 고용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고용지원센터 ([www.workgo.kr](http://www.workgo.kr)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고용유지 지원금

### 1) 개요

- 생산량 감소,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, 훈련, 휴직,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(수당)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

### 2) 신청방법

- 지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

### 3) 지원절차
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고용유지조치 실시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 →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(사업주))

※ 훈련비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훈련종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

### 4) 지원대상

-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아르바이트라도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된다.

- 해고 예고자,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 2. 전직지원 장려금

### 1) 개요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, 정년, 근로계약,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하는 제도

### 2) 신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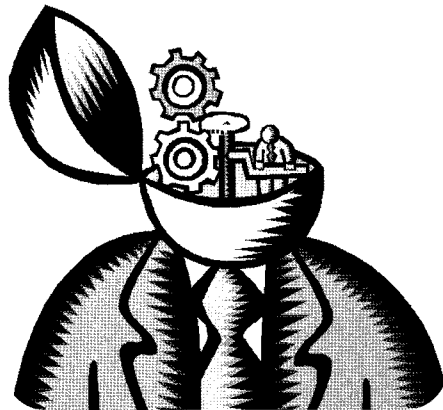
- 계획서 제출 → 승인 → 프로그램 실시 → 장려금 신청 → 지급

### 3) 지원대상

- 회사의 매출액 혹은 생산량 5% 감소
- 재고량이 전년도 보다 10% 이상 증가
- 부서의 폐지나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을 축소 조정
- 새로운 시설 투자 or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규모 축소한 경우
- 중소기업체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

### 4) 자격요건

- 조업 : 500인 미만
- 광업 / 건설업 / 운수업 / 창고업 / 통신업 : 30인 미만
- 기타 : 100인 미만



## 3. 재고용 장려금

### 1) 개요

- 구조조정, 임신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

### 2) 지원요건

-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6개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

### 3) 지원수준

- 재고용 1인당 6개월간 월 40만원 지급(대규모기업 월 30만원)

4) 지급절차

- 지원대상자 고용(사업주) →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장려금 신청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**4.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**

1) 개요

-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규 고용을 확대 시키기 위한 제도

2) 신청방법

-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

3) 지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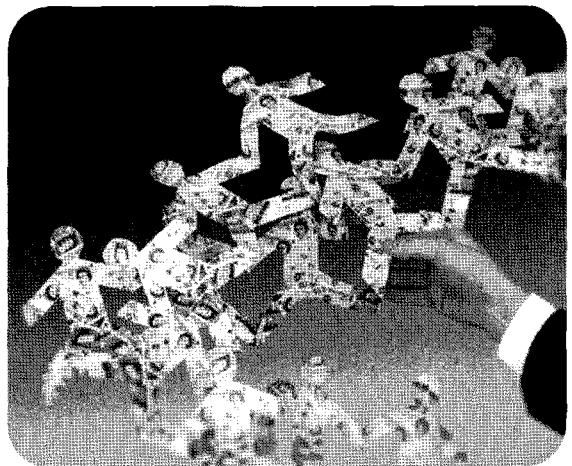
-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(사업주) → 특례신고서수리 통지(노사지원과) → 분기단위로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고용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4) 지원대상

-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(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)의 사업주

5) 우선지원

- 광업 300인 이하, 제조업 500인 이하
- 건설업 300인 이하
- 운수/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
- 기타 산업 100인 이하
-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



**5. 교대제 전환지원금**

1) 개요

-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2) 신청방법

- 신청서류를 교대제 전환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

3) 지급절차

- 교대제 전환 후 근로자 채용(사업주) →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4) 지원요건

-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할 것 (다만,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)  
 - 교대제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

5) 지원수준

- 교대제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(대규모기업 120만원)  
 ※ 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/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
 -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

**6.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**

1) 개요

-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

2) 신청방법

- 고용환경 개선 시설·설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.  
 -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
 -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

3) 지급절차

-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계획승인(고용지원센터) →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고용환경 개선 및 완료신고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4) 지원수준

- 시설·설비 투자금액의 50%(3,000만원 한도)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(최대 30명)을 1회 지급
-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

5) 지원대상

-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

## 7.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

1) 개요

-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

2) 지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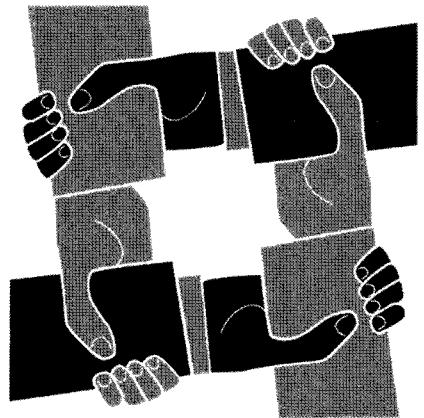
- 전문인력채용 → 분기별로(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)  
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신청서 제출 → 장려금 지급

3) 지원수준

- 전문인력 1인당 분기 360만원(월 120만원)을 채용후 1년간 지원
- 채용된 전문인력이 월 임금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원

4) 지원대상

-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



## 8.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

1) 개요

-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

## 2) 신청방법

-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1년 이내 신규업종으로 진출을 완료
- 역월상 분기별로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신청서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## 3) 지원대상

-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
- 신규 업종 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, 신규 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 수가 초과한 경우

# 9. 신규고용 촉진장려금

## 1) 개요

- 고령자, 장애인, 청년실업자, 여성가장, 장기구직자의 채용을 돕기 위하여,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

## 2) 이점

- 대상자 채용시 매월 15만원 ~ 60만원의 장려금을 12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

## 3) 기타

-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(국가 또는 지자체, 한국산업인력공단,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) 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한 사람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거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.